


장학 규정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준번호	학생행정 장학03	제정일	1991. 12. 1.
개정차수	47차	최근 개정일자	2021. 1. 11.

<전면 개정 2010. 11. 1.>

<2015년 3월 1일 시행,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 변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선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의 규정에 따라 장학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학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0. 4. 26.>

제3조(장학금 기준 및 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고,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②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 시 장학금액만큼 감면하는 선감면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장학생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불할 수 있다.

<항 분리 및 변경 2018.6.20.>

제4조(지급대상) 본 대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된다.

1. 입학 시 성적이 우수한 학생
2.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3.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
4.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5. 국가나 본 대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5조(신입학생·편입학생·재입학생의 기준) 이 규정에서 신입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이라 함은 각각 최초로 입학하는 첫 번째 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하며, 다음 학기부터는 재학생으로 분류한다.

제2장 장학금의 종류 및 등급

제6조(장학금 종류) ① 본 대학교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12.>

1. <개정 2008. 9. 16.>, <삭제 2015. 7.16>
2. 입학우수장학금<삭제 2008. 9. 16.>, <신설 2013. 6. 28.>
3. 백약장학금
4. 권학장학금
5. 특기장학금
6. 국가고시장학금

7. 보훈장학금
 8. 광주민주화유공장학금
 9. 근로장학금
 10. 특별장학금
 11. 공로장학금
 12. 군위탁생 장학금
 13. 해외연수장학금
 14. <삭제 2008. 9. 16.>
 15. 가족장학금
 16. <삭제 2008. 9. 16.>
 17. <삭제 2007. 5. 7.>
 18. 외국인학생장학금
 19. 교직원가족장학금
 20. 교외장학금
 21. 국가장학금 <신설 2012. 3. 1.>
 22. 새터민장학금 <신설 2006. 1. 25.>
 23. Pride CU 특별장학금 <신설 2014. 7. 1.>, <개정 2020. 11. 12.>
 24. 동문 자녀 장학금 <신설 2015. 7.16>>
 2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장학금 <신설 2016.2.29.>
 26. 교직원 사랑장학금 <신설 2016.2.29.>
 27. 장애학생복지장학금 <신설 2020. 11. 12.>
 28. 퇴직교직원가족장학금 <신설 2020. 11. 12.>
 29. 문화마일리지장학금 <신설 2020. 11. 12.>
 30. 조선대학교설립동지장학금 <신설 2020. 11. 12.>
 31. 법인산하교직원장학금 <신설 2020. 11. 12.>
 32. 그 밖의 장학금 <호 이동 2006. 1. 25.>, <호 신설 및 이동 2014. 7. 1>, <호 이동 2015. 7. 16.>, <호 이동 2016. 2. 29.>, <호 이동 2020. 11. 12.>
- ② 본 대학교 장학금은 해당 장학금의 세부지침 또는 장학금 지급기관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0. 11. 12.>

1.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2. 등록금 외의 생활비(학업보조비 포함)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제7조(장학 등급) 장학등급 및 장학등급별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별 장학금액이 다를 수 있다. <개정 2010. 4. 26.>

1. 1종: 등록금 전액
2. 2종: 등록금의 1/2 금액
3. 3종: 등록금의 1/3 금액
4. 4종: 등록금의 1/4 금액
5. 5종: 등록금의 1/5 금액
6. 그 밖에 필요한 경우의 장학등급

제3장 장학위원회

제8조(장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 장학위원회와 대학 장학위원회를 둔다.

② 본부 장학위원회는 취업학생처장이 위원장, 위원은 각 대학 학장(독립학부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취업학생처 장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 11. 24.>, <개정 2007. 5. 7.>, <개정 2010. 4. 26.>, <개정 2015. 3. 1.>

③ 대학 장학위원회는 각 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대학의 학부(과)장,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 11. 24.>, <개정 2007. 5. 7.>

④ 독립학부 장학위원회는 독립학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속교수 및 담당직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7. 5. 7.>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독립학부의 위원 중 담당직원은 해당 부서 근무기간으로 한다. <항 이동 2007. 5. 7.>

제9조(장학위원회의 기능) 각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제도 운영 및 관련 규정 <개정 2010. 4. 26.>
2. <삭제 2010. 4. 26.>
3. 장학생 선발기준 <개정 2010. 4. 26.>
4. <삭제 2010. 4. 26.>
5. 그 밖에 장학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4장 장학생 추천 및 선발

제10조(교내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교내장학생은 추천 및 선발 절차가 따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선발한다. <개정 2011. 2. 1.>

제11조(교외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교외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선발한다. <개정 2020. 11. 12.>

1.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사업(이하 ‘국가장학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국가장학금 운영지침에 따른다. <신설 2009. 3. 30.>, <개정 2012. 3. 1.>
2. 대학 및 학부(과)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 받는 교외장학금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9. 3. 30.>, <개정 2014. 7. 1.>
3. 대학을 지정하지 않고 장학생 추천을 의뢰 받은 교외장학금(국가장학사업 제외)은 교외장학기관의 추천기준, 대학별 장학생 추천 비율, 가정형편,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취업학생처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9. 3. 30.>
4. 수혜자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 받는 경우, 교육부의 외부장학금 운영 절차에 따라 추천한다.<호 이동 2009. 3. 30.>

제5장 각종 장학금

제1절 교내장학금

제12조(CU Leader 장학금) <삭제 2015. 7.16>

제13조(입학우수장학금)<삭제 2008. 9. 16.> ① 입학성적이 우수한 신입생에게는 입학우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 6. 28.>

② 입학우수장학금의 자격기준, 장학금, 장학생유지조건 및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CU Leader 장학금 및 입학우수장학금 지급 세칙에 따른다. <신설 2013. 6. 28.>

제14조(백악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백악성적장학금),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백악복지장학금), 학생회 활동 등을 통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학생(백악면학장학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06. 1. 25.>, <개정 2009. 2. 16.>, <개정 2012. 3. 1.>, <개정 2013. 1. 28.>, <개정 2013. 6. 28.>, <개정 2014. 7. 1.>, <개정 2020. 11. 12.>

1. 장학등급은 1종, 2종, 3종, 4종, 5종으로 한다.
2. 장학금 배분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학업성적, 특성화기여도: 70% <개정 2011. 9. 1.>
 - 나. 가정 사정 및 면학분위기 조성 기여도: 30% <개정 2011. 9. 1.>
3. 학업성적으로 선발하는 장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최저 기준 학점 이상이고, 학부(과)의 전공별 학업 성적이 상위 50/100이내에 해당된 학생이어야 한다.<개정 2013. 6. 28.>, <개정 2014. 7. 1.>
4. 제3호의 경우 <별표 1>‘공인 TOEIC 대비 외국어 환산성적 기준표’(이하 ‘외국어 환산 성적기준’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기준점수를 충족한 학생을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삭제 2012. 3. 1.>, <신설 2014. 7. 1.>, <개정 2015. 7. 16.>, <개정 2018. 6. 20.>, <개정 2019. 5. 27.>
 - 가. ‘학년’은 수혜받을 학년을 말한다.
 - 나. 기준점수: 1학년(시험 응시자), 2학년(400점 이상), 3학년(500점 이상), 4학년(600점 이상)
 - 다. 인정시험 종류 : 1~3학년(공인외국어시험, 본교 주관 YBM TOEIC특별시험), 4학년(공인외국어시험)
 - 라. 의과대학(간호학과 제외)·치과대학·약학대학은 적용하지 않는다.
 - 마. 그 외 공인 TOEIC 대비 외국어 환산성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5. 단과대학(독립학부 포함) 장학생 선발은 해당 대학장(독립학부장)이 단과대학(독립학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6. 1. 25.>, <개정 2012. 3. 1.>
6. 단과대학 학생회 활동 등을 통해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학생이 백악면학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2.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2. 16.>, <개정 2012. 3. 1.>, <개정 2013. 1. 28.>, <개정 2013. 6. 28.>, <개정 2014. 7. 1.>
7. 백악복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저소득장학금(국가장학금 I 유형) 신청자 중에서 선발하여 지급하며, 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단, 미신청자 중 소득분위 확인 가능한 증빙을 제출한 경우 포함한다. <개정 2014. 7. 1.>, <개정 2015. 7. 16.>, <개정 2016. 8. 10.>, <개정 2018.6.20.>
8. 장학생 추천 시 동점자 처리 순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호 이동 및 변경 2013. 1. 28.>
 - 가. 평점평균의 소수점 세 자리까지 산출하여 성적이 높은 학생
 - 나. 해당학기의 총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 <목 이동 2006. 1. 25.>, <목 이동 2007. 1. 30.>
 - 다. 실점수(입력점수) 평균의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출하여 성적이 높은 학생 <신설 2006. 1. 25.>, <목 이동 2007. 1. 30.>
 - 라. 전공필수과목의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목 이동 2006. 1. 25.>

마. 전공과목의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목 이동 2006. 1. 25.>

바. 전공과목 신청학점이 많은 학생 <목 이동 2006. 1. 25.>

사.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학부(과) 교수회의에서 인정하는 학생 <목 이동 2006. 1. 25.>

제15조(권학장학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본 대학교 입학전형에 합격한 신입학생(편입학생, 재입학생 포함) 및 재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1. 신입학생: 등록금의 2종(성적제한 없음) <개정 2008. 10. 30.>, <개정 2018.6.20.>

2. 재학생 <개정 2013. 1. 28.>

가. 성적기준 : 수급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유형 I 성적기준에 따름. <개정 2014. 7. 1.>, <개정 2018.6.20.>

나. 장학등급 : 2종(다만, 200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등록금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8. 2. 15.>, <개정 2009. 3. 30.>

3. <신설 2010. 4. 26.>, <삭제 2015. 7.16>

제16조(특기장학금) ① 체육, 무용, 미술, 음악 등의 특기자에게는 특기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기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에서 정한다.

제17조(국가고시장학금) 재학 중 각종 국가고시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고시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의과대학(간호학과 제외),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소속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2. 1.>, <개정 2014. 7. 1.>, <개정 2018.6.20.>

1. 국가고시 범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입법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법원 행정고등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 <개정 2011. 9. 1.>, <개정 2018.6.20.>

2. 장학등급 및 지급기한 <개정 2008. 2. 15.>

가. 1차 합격: 재학 중 1회에 한정하여 합격 후 2개 학기 1종 지급<개정 2008. 10. 1.>

나. 2차 합격 이상: 합격 후 졸업 시까지 1종 지급 <개정 2018.6.20.>

3. <삭제 2008. 2. 15.>

제18조(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학업성적기준에 따라 1종 장학금(자녀의 경우 1/2은 국고보조)을 지급한다. 이 경우 신입학생·편입학생의 입학 해당 학기에는 성적 제한을 두지 아니 하고, 재입학생은 제적 전 최종학기 성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1. 24.>, <개정 2011. 2. 1.>

1. 본인: 학업성적 제한 없음

2. 직계자녀: 백분율 환산 학업성적 70점 이상 <개정 2004. 11. 24.>

제19조(광주민주화유공장학금) 광주민주화유공자 본인 또는 직계자녀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학업성적 기준에 따라 1종 장학금(직계자녀의 경우 1/2은 국고보조)을 지급한다. 이 경우 신·편입학생의 입학 해당 학기에는 성적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재입학생은 제적 전 최종학기 성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1. 24.>

1. 본인: 학업성적 제한 없음

2. 직계자: 백분율 환산 학업성적 70점 이상 <개정 2004. 11. 24.>

제20조(공로장학금) ① 학칙에서 정하는 학생단체 활동을 통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상자: 총학생회 간부, 동아리 연합회 간부, 창업동아리 연합회 간부, ROTC 간부, 신문방송사 간부 등
2. 성적 기준: 평점평균 2.0 이상

② <삭제 2010. 11. 1.>

제21조(특별장학금) 특별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취업학생처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 30.>, <개정 2015. 3. 1.>

1. 대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학생
2. 가정 형편이 곤란한 학생 <개정 2008. 2. 15.>
3. 국제규모나 전국규모의 각종 경시대회(학술대회, 공모전 등 포함)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 <개정 2011. 9. 1.>
4. 그 밖에 장학혜택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

제21조의2(Pride CU특별장학금)<신설 2013. 6. 28.> Pride CU특별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1. Pride CU 백학장학금 : 재학생의 학업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업성적과 영어성적(제2외국어포함) 그리고 자기개발 능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
2. Pride CU 청송장학금 : 중증장애인(3급이내)을 둔 가정, 실직, 파산, 중병, 가계대출 연체, 불의의 사고, 다자녀, 다문화가구 자녀로 학비마련이 곤란한 자 중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
3. Pride CU 서석장학금 : 전국규모 국내외 전시회, 경진대회, 경기대회 입상자, 특허출원, 학술활동, 실용신안, 기타 전공관련 우수한 실적을 거둬 우리 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게 지급

제22조(근로장학금) 교내 특정분야에서 근로를 제공한 학생에게 해당 부서장은 예산 편성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군위탁생 장학금) 군에서 위탁하여 수학하는 학생에게 2종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24조(해외연수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에게는 해외연수에 필요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농어촌학생장학금) <삭제 2008. 9. 16.>

제26조(가족장학금) 2명 이상의 가족이 본 대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대상 가족 학생 수에서 1명을 제외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기한 내에 장학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 3. 1.>

1. 자격
 - 가.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
 - 나. 2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되는 학생 <개정 2010. 4. 26.>
2. 장학 등급
 - 가. 신입학생(편입학생, 재입학생 포함): 4종(성적 제한 없음)
 - 나. 재학생 <개정 2018.6.20.>
 - 1) 석차순 50/100 이내: 4종
 - 2) 석차순 70/100 이내: 5종
 - 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개정 2018.6.20.>

제27조(희망장학금)<삭제 2008. 9. 16.>

제28조(야간강좌 학업장려장학금) <삭제 2007. 5. 7.>

제29조(외국인학생장학금) 외국인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대상 학생 중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장이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학 등급 : 1종, 2종, 3종, 4종 <개정 2008.10.30.>, <개정 2011.2.1.>, <개정 2016.2.29.>

2. 성적 기준 <개정 2003. 4. 25.>

㉠ 신입생(신입학 및 편입학) <개정 2011.2.1.>, <개정 2016.2.29.>

가. 1종: TOPIK 5급 이상

나. 2종: TOPIK 4급

다. 3종: TOPIK 3급 또는 언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 제출자

※ TOPIK 3급 이상의 신입생은 입학금 면제

㉡ 재학생 <개정 2008. 10. 30.>, <개정 2011.2.1.>, <개정 2016.2.29.>

가. 1종: 직전 학기 평점평균 성적이 4.2이상

나. 2종: 직전 학기 평점평균 성적이 3.8이상 4.2미만

다. 3종: 직전 학기 평점평균 성적이 3.5이상 3.8미만

라. 4종: 직전 학기 평점평균 성적이 3.0이상 3.5미만

3. <삭제 2011. 9. 1.>

제30조(교직원가족장학금) 본 대학교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학교법인사무처 및 조선대학교 병원,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포함)본인,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입학 당시)로서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 2. 1.>, <개정 2020. 11. 12.>

1. 장학 등급

가. 신입생(편입학생, 재입학생) : 등록금의 2/3(입학 해당 학기에는 성적 제한 없음)

나. 재학생 <개정 2009. 2. 16.>, <개정 2010. 4. 26.>, <개정 2011. 4. 1.>

1) 평점평균이 3.0 이상이면서 제14조 4항의 외국어 환산성적 기준점수를 충족한 학생으로 석차순 35/100 이내: 등록금 전액<개정 2013. 6. 28.>, <개정 2014. 7. 1.>, <개정 2014. 7. 1.>, <개정 2018.6.20.>

2) 평점평균이 3.0 이상이거나 석차순 70/100 이내: 등록금의 2/3 <개정 2018.6.20.>

2. <삭제 2011. 2. 1.>

제30조의2(교수요원육성장학금) <신설 2004. 11. 24.>, <삭제 2008. 9. 16.>

제30조의3(새터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본인이나 직계자녀에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6. 1. 25.>, <개정 2016. 8. 10.>

1. <신설 2006. 1. 25.>, <삭제 2016. 8. 10.>

2. <신설 2006. 1. 25.>, <삭제 2016. 8. 10.>

제30조의4(장애학생복지장학금)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는 소정의 기한 내에 장학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조 신설 2008. 2. 15.>

1. 장애등급별 및 장학등급: 장애등급 1급·2급-2종, 3급-3종, 4급-4종, 5급·6급 -5종

2. 장애 기준별 장학등급: 심한 장애-2종, 심하지 않은 장애-4종 <신설 2019. 9. 23.>

3. 자격 <개정 2019. 9. 23.>

가. 신입학생(편입학생, 재입학생포함): 성적 제한 없음 <개정 2014. 7. 1.>

나. 재학생: 평점평균 2.0 이상인 사람

제30조의5(퇴직 교직원 가족장학금) <신설 2011. 2. 1.> ① 본 대학교 교직원(제30조 교직원 정의와 동일)이 퇴직할 경우 재직 중 본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자녀에게는 졸업 시까지 퇴직 교직원가족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해임 및 파면으로 인하여 퇴직한 교직원의 자녀는 제외한다.

② 장학등급 및 성적기준은 제30조(교직원가족장학금)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30조의6(문화마일리지장학금) 문화마일리지장학금 지급 및 문화리더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 2. 1.>

제30조의7(조선대학교 설립공로장학금) 본 대학교에 설립기금을 출연한 자의 자녀 및 손자녀에게는 설립공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 2. 1.>

제30조의8(동문 자녀 장학금) 신(편)입생 중 부모가 본 대학교 학사과정 졸업생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7.16>

1. 지급대상 : 신(편)입생 중 부모가 모두 본 대학교 학사과정을 졸업한 학생 <개정 2018.6.20.>

2. 장학등급 : 3종

3. 지급기한 : 신(편)입학 첫 학기에 한함 <개정 2018.6.20.>

4.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개정 2018.6.20.>

제30조의9(법인 산하 교직원 장학금) 조선대학교 법인산하 전임교원 및 정규교사, 정규 직원(조선이공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부속중·고등학교 포함) 본인, 배우자 및 미혼자녀가 본 대학교에 신(편)입학 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12.>

1. 장학등급 : 3종

2. 지급기한 : 신(편)입학 첫 학기에 한함

3.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제31조(그 밖의 장학금) 자격증 취득이나 국제교류 및 창업, 취업역량, 어학실력 향상을 위한 지원 경비와 각종 경시대회 상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재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장학금 외에 별도의 생활비 지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4. 7. 1.>, <개정 2016. 2. 29.>, <개정 2021. 1. 11.>

제2절 교외장학금

제32조(교외장학금) 국가나 외부기관,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교외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교외장학금 대상자의 추천 및 선발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 3. 30.>

제6장 보칙

제33조(장학생선발 성적 인정학기) 장학생 선발에 따른 성적 인정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생: 직전 학기
2. 복학생: 복학 전 최종학기(학기제 복학생의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학기)

제34조(장학금 지급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학금의 지급을 취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2. 전과(부)한 경우(해당 학기 백악성적장학금에 한함) <개정 2011. 9. 1.>
3. 미 졸업자인 경우
4. 졸업을 연장 또는 유보하는 경우 <개정 2018.6.20.>
5. 그 밖의 사유로 본인이 포기한 경우

②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 해당 기간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편입학 및 재입학 학생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학기가 경과한 후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제35조(장학금 지급 유효기간) 장학금의 지급 유효기간은 해당 학기에 한정한다. 다만, 연속 장학생(교직원가족장학생, CU Leader 장학생, 입학우수장학생, 보훈장학생, 장애복지장학생 등 최초 선발되어 정해진 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생) 또는 백악성적장학생으로 선발 확정되었으나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년·학기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장학금액은 복학하는 해당 학년·학기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재입학학생의 경우 재입학전 최종 학년·학기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입학한 학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3. 1.>, <개정 2015. 7.16>

제36조(장학금의 중복 지급 금지) 각종 장학금은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1. 12.>

1. 교내 장학금 중 특별히 중복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경우
2. 교내장학금 중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이 장학금을 수혜할 경우 <신설 2012. 3. 1.>
3. 교외장학금 중 특정 단체, 개인의 후원이나 의무 복무(취업은 제외) 등 개인의 자격으로 교외장학금을 받는 경우 <호 변경 2012. 3. 1.>
4. 등록금 외의 생활비(학업보조비 포함) 장학금을 수혜받은 경우
5. 기타 총장이 인정한 경우

제37조(장학금 지급액 중 백원 미만의 처리) 장학금 지급액 중 백원 미만은 절사하여 처리한다.

제38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며,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재학생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복학생의 경우에는 백악장학생 및 입학특별장학생을 제외한 각종 교내 장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입학하는 학년·학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가족장학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함께 가족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종전 규정과 이 규정을 각각 적용받는 경우에는 등록금액이 많은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0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되, 제15조(권학장학금), 제30조의4(장애 학생복지장학금)는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2. (국가고시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국가고시 합격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6일부터 시행하되, 제12조, 제13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의2 변경 규정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장학금 종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입학특별장학금, 희망장학금, 교수 요원육성장학금 적용대상으로 입학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외국인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외국인학생 장학금)의 변경 규정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되, 제12조 제2항 별표 1의 CU Leader 장학금 자격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2. (교직원가족장학금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0학년도 1학기 장학금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국가고시장학금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현재 지급 중인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의 국가고시 장학생에게는 이 조항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3. (외국인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는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직원가족장학금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1학년도 1학기 장학금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CU Leader 장학금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2016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하며, 현재 재학 중인 CU Leader 장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생 자격을 유지한다.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하되, 제29조(외국인학생장학금)에 대하여는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장애학생복지장학금에 따른 경과조치) 2019년 7월 1일 신청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30조의9 법인 산하 교직원 장학금은 시행일 이전 재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14.7.1.>, <개정 2018.6.20.>, <개정 2019.5.27.> 공인 TOEIC 대비 외국어 환산성적 기준표<제14조 제4호 관련>

TOEIC	영어									일본어						중국어					
	TEPS		TOEFL		TEPS-S		TOEIC-S		OPIC	JLPT N1(1급)		JLPT N2(2급)		JLPT N3(3급)		신HSK 6급		신HSK 5급		신HSK 4급	
	from	to	from	to	from	to	from	to		from	to	from	to	from	to	from	to	from	to	from	to
990	927	990	119	120	85	99	200	200		180	180					300	300				
985	919	926	118	118	84	84															
980	911	918	117	117	82	83	190	190	AL	179	179					290	299				
975	902	910	116	116	80	81															
970	893	901	115	115	79	79				178	178					280	289				
965	884	892	114	114	78	78															
960	873	883			77	77	180	180		177	177					270	279				
955	863	872	112	113	75	76															
950	852	862	111	111	74	74				176	176					260	269				
945	842	851			73	73															
940	833	841			72	72				175	175					250	259				
935	824	832	110	110	71	71	170	170	IH												
930	815	823	109	109	70	70				174	174					240	249				
925	806	814	108	108																	
920	798	805			69	69				173	173					230	239				
915	791	797	107	107	68	68															
910	782	790	106	106						172	172					220	229				
905	774	781	105	105	67	67	160	160													
900	766	773								170	171					210	219				
895	758	765	104	104	66	66															
890	751	757								168	169					200	209				
885	744	750	103	103	65	65															
880	737	743	102	102						166	167					190	199				
875	730	736			64	64															
870	723	729	101	101			150	150		164	165					180	189				
865	716	722			63	63															
860	708	715	100	100					IM3	162	163										
855	701	707	99	99	62	62												300	300		
850	695	700	98	98						160	161										
845	688	694			61	61												290	299		
840	681	687	97	97						158	159										
835	675	680	96	96	60	60												280	289		
830	669	674					140	140		156	157										
825	663	668	95	95	59	59												270	279		
820	658	662	94	94						154	155										
815	652	657	93	93	58	58												260	269		

TOEIC	영어									일본어						중국어					
	TEPS		TOEFL		TEPS-S		TOEIC-S		OPIC	JLPT N1(1급)		JLPT N2(2급)		JLPT N3(3급)		신HSK 6급		신HSK 5급		신HSK 4급	
	from	to	from	to	from	to	from	to		from	to	from	to	from	to	from	to	from	to	from	to
810	647	651	92	92						152	153										
805	642	646																250	259		
800	637	641	91	91	57	57				150	151										
795	632	636																240	249		
790	628	631	90	90	56	56				148	149										
785	623	627	89	89														230	239		
780	619	622	88	88						146	147										
775	615	618			55	55	130	130										220	229		
770	611	614								144	145										
765	606	610	87	87					IM2									210	219		
760	602	605	86	86	54	54				142	143										
755	598	601																200	209		
750	594	597	85	85						140	141										
745	590	593	84	84	53	53												190	199		
740	585	589								137	139										
735	581	584	83	83														180	189		
730	577	580			52	52				134	136										
725	573	576	82	82																300	300
720	569	572								131	133										
715	566	568	81	81	51	51														290	299
710	562	565								128	130										
705	558	561	80	80			120	120												280	289
700	555	557			50	50				125	127										
695	551	554	79	79																270	279
690	548	550			49	49				122	124										
685	544	547	78	78																260	269
680	541	543								119	121										
675	538	540	77	77	48	48														250	259
670	534	537								116	118										
665	531	533	76	76																240	249
660	527	530			47	47				113	115										
655	524	526	75	75																230	239
650	520	523								110	112										
645	516	519	74	74	46	46														220	229
640	512	515	73	73								177	180								
635	508	511			45	45														210	219
630	505	507	72	72								173	176							200	209
625	501	504			44	44	110	110													

TOEIC	영어									일본어						중국어					
	TEPS		TOEFL		TEPS-S		TOEIC-S		OPIC	JLPT N1(1급)		JLPT N2(2급)		JLPT N3(3급)		신HSK 6급		신HSK 5급		신HSK 4급	
	from	to	from	to	from	to	from	to		from	to	from	to	from	to	from	to	from	to	from	to
620	497	500	71	71								169	172							190	199
615	493	496	70	70																	
610	489	492			43	43						165	168							180	189
605	486	488	69	69																	
600	482	485			42	42						160	164								
595	479	481	68	68																	
590	476	478							IM1			155	159								
585	473	475	67	67	41	41															
580	469	472										150	154								
575	466	468	66	66																	
570	463	465			40	40						145	149								
565	460	462	65	65																	
560	456	459			39	39						140	144								
555	453	455	64	64			100	100													
550	450	452			38	38						135	139								
545	447	449	63	63																	
540	443	446	62	62	37	37						130	134								
535	440	442			36	36															
530	437	439	61	61								125	129								
525	433	436	60	60	35	35															
520	430	432			34	34						120	124								
515	427	429	59	59																	
510	423	426	58	58	33	33						115	119								
505	420	422			32	32															
500	416	419	57	57	31	31						110	114								
495	412	415	56	56	30	30															
490	409	411	55	55	29	29								174	180						
485	405	408	54	54			90	90													
480	401	404	53	53	28	28								167	173						
475	398	400	52	52																	
470	394	397	51	51	27	27								160	166						
465	390	393	50	50																	
460	387	389	49	49	26	26								153	159						
455	383	386	48	48	25	25															
450	380	382	47	47										146	152						
445	376	379			24	24															
440	372	375	46	46	23	23								139	145						
435	368	371			22	22															

TOEIC	영어									일본어						중국어					
	TEPS		TOEFL		TEPS-S		TOEIC-S		OPIC	JLPT N1(1급)		JLPT N2(2급)		JLPT N3(3급)		신HSK 6급		신HSK 5급		신HSK 4급	
	from	to	from	to	from	to	from	to		from	to	from	to	from	to	from	to	from	to	from	to
430	364	367	45	45	21	21	80	80						132	138						
425	360	363	44	44																	
420	356	359			20	20								125	131						
415	351	355	43	43	19	19															
410	345	350	42	42										118	124						
405	340	344	41	41	18	18															
400	334	339	40	40										110	117						
395	329	333	39	39	17	17	70	70	IL												
390	323	328	38	38	16	16															
385	318	322	37	37																	
380	314	317	36	36	15	15															
375	310	313	34	35																	
370	306	309	32	33																	
365	303	305	30	31	14	14	60	60													
360	299	302	25	29	13	13															
355	296	298	22	24																	
350	293	295	21	21	12	12															
345	290	292	20	20	11	11															
340	288	289	19	19																	
335	285	287	18	18	10	10	50	50													
330	283	284																			
325	282	282	17	17	9	9															
320	279	281			8	8															

TOEIC	러시아어			TOEIC	독일어	TOEIC	프랑스어	TOEIC	스페인어
	FLEX	SNUL	TORFL						
990	1000	100	4단계	990	Goethe-Zertifikat C2	980	DALF C2	990	DELE C2
900	951~999	96~99		950	TestDaf-TDN5	920	DALF C1	950	DELE C1
850	901~950	91~95	3단계	920	Goethe-Zertifikat C1	880	DELFB2	900	DELE B2
800	851~900	86~90		900	TestDaf-TDN4	780	DELFB1	850	DELE B1
750	811~850	81~85	2단계	880	TestDaf-TDN3	650	DELFA2	750	DELE A2
700	776~810	76~80			Goethe-Zertifikat B2	550	DELFA1	700	DELE A1
650	701~775	71~75	1단계	780	Goethe-Zertifikat B1				
600	626~700	66~70		650	Goethe-Zertifikat A2				
550	576~625	61~65	기본 단계	550	Goethe-Zertifikat A1				
500	526~575	51~60							
400	426~525	41~50	기초 단계						